

# 2026년 『세포배양 소재 상용화 기업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는 지역 세포배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핵심 소부장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이끌기 위해 2026년 「세포배양 소재 상용화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세포배양 소재 상용화 기업지원
- 사업목적
  - 세포배양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안전성 기준 확보
  - 실증 기반 파이프라인 구축을 통한 경북형 세포배양 산업 생태계 조성
  - 연관 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입 도모 및 도내 창업, 일자리 확대
- 지원대상: 세포배양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기업  
(상세 내용은 2 신청 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 - 신청자격 확인)
- 지원기간: 2026. 04. ~ 2026. 11. (8개월)
- 지원예산: 총 5.6억 원 이내
- 지원규모: **총 9개사 내외 선정, 기업당 최대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차등 지원**
- 지원내용

프로그램명	지원내용
기술 고도화	- 세포배양 소재 분야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개발 시제품 고도화를 위한 혁신기술 및 상용화 연구 지원 - 국내·외 공인기관을 통한 CoA(Certificate of Analysis) 안전성 평가 지원 등

※ 선정평가위원회 심사 결과를 통해 고득점 기업부터 순위별로 차등 지원

※ **자부담(기업부담금): 지원금의 20% 이상 현금 매칭 필수**

- 총 사업비(A+B) = 지원금(A)+기업부담금(B, B=지원금의 20% 이상)
- 예) 총 사업비(9,600만원) = 지원금(8,000만원) + 기업부담금(1,600만원)

※ **총사업비는 공급가액으로만 구성되며, 부가가치세는 본 사업에서 지원되지 않음**

※ **사업비 지원 항목: 인건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40% 이하로만 책정 가능
- 연구활동비는 외부 시험분석 의뢰비와 회계정산수수료만 인정

## ② 신청 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

### ○ 신청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세포배양 전후방 연관 산업 영위 기업  
(원부자재, 식품, 의약품, 세포, 배지, 배양관련 기자재 등)
2. 기술성숙도(TRL) 6단계 이상 기술 보유 기업 ([별표] TRL 단계별 정의 참조)
3. 경상북도 내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곳 이상 보유 기업 (단, 사업 공고일 이전 경상북도 또는 의성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타지역 기업도 신청 가능)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 지원 제외 대상 (공고일 기준 적용)

#### 1. 사업 적합성 및 중복 지원 방지

- 지원 분야 및 대상이 본 사업의 목적과 상이한 경우
- 신청 과제가 이미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본 사업의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2. 법적·행정적 결격 사유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보고서 제출, 정산금 납부 등 정부 지원 사업의 기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 3. 세금 체납 및 채무 불이행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예외)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4. 재무 건전성 (재무제표 기준)

- 기업의 부도,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예외)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기업으로서, 최근 2개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경우
  - 자본전액잠식 상태면 부채비율 1,000% 이상으로 간주함
  -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예외) 기업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등급(TCB)이 'BBB-' 이상인 경우나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적용 제외

※ 25년 결산이 미확정되어 재무제표 대신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제출할 경우, 재무 평가는 24년 확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진행

#### 5. 기타 사항

- 신청서 등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 기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선정 평가 및 절차

#### ○ 선정 평가

- (평가방식) 제출된 참여신청서를 바탕으로 **평가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대상 선정
  - ※ 단,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필요 시 사전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평가 대상 기업을 제한할 수 있음.
- (가점적용) 신청 기업 중 공고문에 명시된 우대사항에 해당할 경우, 관련 증빙 확인 후 규정에 따른 가점 부여
- (선정기준) 종합평점 **7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지원
  - ※ 70점 미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70점 이상을 획득하였으나 탈락한 기업은 예비합격 기업으로 관리하고, 선정기업의 포기 발생 시 순차적으로 지원함.
- (지원규모) 종합평점 고득점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원

#### ○ 평가 항목

평가 항목	평가구분	배점	평가방법
사업계획의 적절성 (50)	사업목적 부합성	10점	◦ 세포배양산업 전후방 관련 기술고도화에 적합성
	사업 수행내용과 안전성평가의 연계성	10점	◦ 안전성 평가와의 연계성 및 계획 수립 여부
	사업 지원의 시급성	10점	◦ 사업화 단계[TRL6(성능평가)이상 여부]에 따른 즉시 사업화 가능성
	사업 결과의 활용성	10점	◦ 결과의 활용계획 수립 여부
	사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10점	◦ 사업목표 및 추진방법 및 기간의 적정성 및 가능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산출근거의 구체성
사업역량의 우수성 (20)	사업기관의 개발역량 우수성 (특허, 기술이전)	최대 10점	◦ 특허출원(1건 당 2점) ◦ 특허등록 및 권리이전(1건 당 5점) ※ 제안과제와의 관련성 必, 배점한도인 10점까지 인정
	사업기관의 사업화 가능성	10점	◦ 지원 품목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결과의 기대효과 (30)	사업성과의 활용 가능성	15점	◦ 보유 기술의 우수성 ◦ 성과지표에 대한 적절성 ◦ 시장진출계획 구체화
	사업성과의 파급효과	15점	◦ 시장진출, 수출효과, 생산성향상 가능성 ◦ 고용창출효과 가능성 ◦ 파급효과의 우수성
<b>소 계(100점)</b>			
가점 (10)	우대 가점	최대 10점	◦ 우대가점[수요처 공급계약 5점,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각2점)] ◦ 기타본 사업의 지원을 통한 지식재산권(특허, 논문 등)에 사사(Acknowledgements)를 표기한 경우 (1건 이상 10점)]
<b>합 계(최대 110점)</b>			

- 우대 가점 (최대 10점 한도, 해당 증빙자료 제출 시에만 인정)
  - 관련 생산 기업(수요기업)에 공급계약(구매확약서 등)을 맺은 기업 (5점)
  - 벤처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 (각 2점)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2점)
  - 본 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지식재산권(특허, 논문 등) 내에 본 사업의 사사 (Acknowledgements)를 명기하여 성과를 등록한 경우 (1건 이상 10점)

○ 선정 절차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협약체결 : 선정기업 ⇄ 경북테크노파크

※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보완 사항 등)에 따라, 협약 체결 전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음.

#### 4 신청서 접수 및 제출 서류

○ 접수 일정 및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03.16.(월) ~ 03.31.(화) 18시까지
- (접수방법)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 온라인 등록 접수
- \*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http://www.gbtp.or.kr)) - 공고·안내 - 사업공고 - 경북TP  
공고명: 2026년 「세포배양 소재 상용화 기업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문의처	(재)경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추진본부 바이오산업육성실 박정호 선임연구원 (☎ 053-819-8132, ✉ <a href="mailto:jeongho@gbtp.or.kr">jeongho@gbtp.or.kr</a> ) 김지우 선임연구원 (☎ 053-819-8126, ✉ <a href="mailto:jwkim1316@gbtp.or.kr">jwkim1316@gbtp.or.kr</a> )
-----	---

○ 신청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별지1) 참여신청서
	② (별지2) 사업계획서 ※ 외부 시험·검사비는 산출 근거 서류(견적서 등) 첨부 필수 - 산출 근거는 2곳 이상 견적서 제출(단일견적일 경우 사유서 제출) - 외부 시험·검사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견적서에 한해 인정
	③ (별지3) 자부담(기업부담금) 납입 확인서
	④ (서식1)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⑤ (서식2) 신청자격 적정 확인서
	⑥ (서식3) 중복지원 금지사항 확인서
	⑦ (서식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우대사항 증빙 서류 포함)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시작일 이후 발급분)
	⑨ 사업자등록증
	⑩ 최근 2개년 4대보험 가입자 증명원 및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
	⑪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개년도: 2024년 ~ 2025년) - 국세청(홈택스) 발급분 제출 - 2025년도 결산 미확정 시: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가능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4~2025년)' 제출
해당시	⑫ 우대 가점 증빙자료 (우대 가점 적용 항목 참조, 증빙서류 확인 시에만 가점 부여) - 관련 생산 기업(수요기업)에 공급계약을 맺은 기업 - 벤처인증, 이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 '세포배양 소재 상용화 기업지원사업' 사사 문구가 포함된 특허, 논문 등 자료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인정 범위: 시험성적서의 발급일은 반드시 사업 수행 기간 내여야 함 (단,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외 발급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⑤ 사업 추진일정

추진절차	수행주체	추진일정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	경북테크노파크	'26.03
선정평가위원회	경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26.04
선정결과통보	경북테크노파크 → 기업	'26.04

과제협약체결	경북테크노파크 ↔ 기업	'26.04
사업비 선지급	경북테크노파크 → 수행기업 (기업부담금 입금 확인 후)	'26.04
과제수행	선정기업	'26.04 ~ '26.11
모니터링(진도점검)	경북테크노파크	'26.07
과제결과보고서 제출	기업 → 경북테크노파크	'26.11
최종평가위원회	경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26.12

※ 추진 일정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6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집행) 사업비는 반드시 지원기업 명의의 전용 통장에서 출금되어야 하며, 과제 완료 후 **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거래명세서**를 완료보고서와 함께 관리기관 및 지정 회계법인에 제출해야 함

**※ 모든 비용 지출 시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것**

- (제출 기한) 지원기업은 협약 종료일 15일 전까지 완료보고서(별지 6)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증빙서류는 협약 종료일까지 제출 가능)

### ○ 최종(종료) 평가

- (평가 방식) 지원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결과물, 사업화 성과,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 평가함. '최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70점 이상은 "성공", 70점 미만은 "실패"**로 판정함
- (사후 조치) 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된 과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

## 7 기타사항

### ○ 기업 모니터링(중간실사)

- (현장 점검) 사업 수행 현황 확인을 위해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실적 보고) 관리기관은 지원기업의 장에게 실적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제재 조치) 모니터링 결과 사업 수행이 극히 미흡하거나 부정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지자체 협의를 거쳐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 사후관리

- (성과 조사) 관리기관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 연도로부터 **3년간** 실용화 지원에 따른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 ○ 협약의 변경

#### - (변경 절차)

- 과제 의 일부 내용(수혜기업의 주요변경사항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원기업이 관리기관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문 및 변경승인 요청서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 관리기관장은 지원기업의 변경 요청을 검토하여 변경으로 인해 종래 협약서로 추진할 때 과제의 목표 달성에 애로사항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 단,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 사업 목표 및 비용의 축소, 기간 변경은 인정하지 않음

- 첨부 서류: [별지 5호] 변경승인 요청서

#### - 유의 사항

- 변경 요청은 협약내용 변경사유 발생 즉시 변경사유(필요 시 입증자료를 첨부)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 지원기업은 변경할 수 없으나, 기업의 양도, 인수·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기업을 양수 받은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은 관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사업 과제를 승계할 수 있음 (해석상의 문제 발생 시 지자체 의견에 따라 결정)

- 지원금 지급 (선정된 지원기업에 한함)
  - (필수 서류 제출)
    - 기업부담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사본** (사업비 관리 및 지출, 지원비 지급용)
    -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사업비 선지급 불가)
    - [별지 4] 협약서 (관리기관에서 준비 예정)
    - [별지 6] 결과 보고서 (사업 종료 후)
  - (필요 시 제출 자료)
    - [별지 5] 변경승인 요청서 (사업 수행 중 필요 시)
  - (지급 시기)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기업부담금(민간부담금) 입금**을 확인하면 해당 지원기업에게 보조금을 선지급
- 기타 사항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내용은 「2026년 세포배양 소재 상용화 기업지원 사업관리 지침」을 준수하며,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 **경상북도 및 의성군의 결정**에 따름
  - 본 공고문 내용 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할 수 있음

**【별표】 기술성숙도(TRL) 단계별 정의**



<TRL 단계별 정의 및 세부 설명>

구분	단계	정 의	세부 설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가 완료된 단계(경제성 미고려)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이 1~수개 미만인 단계
	6	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파일럿 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 확보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
사업화	9	사업화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를 위해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